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2호 2007년 6월 pp.57~87
한국세무학회

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규영**

<요 약>

현행 세제 하에서는 연금소득세의 부담이 퇴직소득세의 부담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과 일시금의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하여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의 하나로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근로자의 경우나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연금의 세 부담이 일시금의 세 부담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의 내용과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는 연금소득공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고소득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나타났던 연금의 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소득은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근로소득과 같은 소득에 해당하며 그 발생행태도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연차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현행 연금소득 공제의 수준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생활자금원이 되는 연금소득의 경우가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담세력이 약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근로소득공제보다 낮은 수준의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연금소득공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서는 근로 소득공제보다 높은 공제수준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소득공제

* 본 연구는 2006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hwanggy@kookmin.ac.kr, 02-910-4286,

I. 서 론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발효되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승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적연금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본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성장위주의 경제 발전기에 소득보장제도가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실직기간의 소득보장과 퇴직 후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제도이다¹⁾. 그러나 현재에는 고용보험의 도입(1995년)과 국민연금의 시행(1988년)으로 실직기간의 소득보장과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법정퇴직금제도의 본래의 기능이 입법당시에 비하여 쇠퇴하였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직금상당액을 외부에 적립하지 않고 내부적립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도산 등의 재무적 위기 발생 시에는 퇴직금의 재원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노후소득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전체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존 연금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재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²⁾.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2001년 7월경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공론화되어 마침내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구체화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해당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종업원의 퇴직 시에는 그 운용자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가 연금형태로 전환된 제도에 해당하는 데,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어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은 퇴직 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

1) 법정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임의적 퇴직금제도로 도입된 이후, 1961년에 강제적 제도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산재보험 이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때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법정퇴직금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2000년에 72.1세에서 2050년에 80.0세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정년을 60세에 맞이한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퇴직 후 기간이 12.1년에서 20년으로 약 65%가 증가하게 된다(김원식 외 2005 참조).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금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관에 적립한다는 점과 연금형태로의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퇴직금 재원을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는 퇴직연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말 세법 개정 때 퇴직보험형태로 외부예치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미 퇴직금 재원의 외부예치를 유도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예치 유도장치는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노후소득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는데,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의 외부예치라는 기능 이외에 연금형태로 지급되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이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제상 유리한 점이 많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제상 불리한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세제환경 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금 수령시의 세 부담과 연금수령시의 세 부담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금 수령시의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여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연금세제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사용한 분석적 비교방법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나,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세법내용(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정 등을 추가하여 보다 정합도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행 퇴직연금세제의 내용을 외국의 퇴직연금세제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시금과 연금의 세 부담 차이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제4장에서는 일시금과 연금의 세 부담차이를 해소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II. 퇴직연금세제의 비교검토

1.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

가. 연금세제의 변천

연금과 관련된 세제는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단계의 세제와 이를 운용하는 단계의 세제,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의 세제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TEE형 연금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TEE형 과세체계란 납부단계에서는 과세(Taxed)하고, 운용단계에서는 면제(Exempt)하며, 수령단계에서도 면제(Exempt)하는 과세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00년 말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1년 이후(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는 EET형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납부단계에서의 과세나 면제의 구분은 연금기여금 납부액을 소득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기여금의 납부에 사용된 재원은 개인의 과세소득이 이용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기여금납부액을 소득공제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을 획득하는 단계에서 개인에게 세금이 과세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과세(Taxed)」로 표현된다. 반면에 기여금납부액을 소득공제하여 주면 기여금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상태가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로 전환되므로 「면제(Exempt)」로 표현된다.

운용단계의 과세란 납부된 기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증식된 이득부분을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금의 운용단계에서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면제(Exempt)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금융시장의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용단계에는 면제형태를 취하고 있다. 운용단계의 투자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전반적인 후생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전영준 2001). 운용단계의 소득을 과세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연금과세의 체계가 지출세 방식이나, 포괄적소득세 방식이나로 나누어진다. 포괄적소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의 과세체계로는 ETT형과 TTE형이 있다³⁾. 운용단계의 소득을 과세하지 않더라도 수령단계에서 이를 과세하게 되면 기금운용소득의 과세누락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기금운용단계의 면제란 결국 과세이연과도 같다.

수령단계의 과세는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를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말 세법개정 시에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므로 현재의 수령단계 과세형태는 「과세(Taxed)」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의 과세형태는 2000년 세법개정 이전의 TEE형(소득공제의 불인정⁴⁾, 기금운용소득의 비과세, 연금소득의 비과세)에서 현재의 EET형(소득공제의 인정⁵⁾, 기금운용소득의 비과세, 연금소득의 과세)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퇴직연금의 연금형태수령분에 대하여는 2006년 1월부터 연금소득(구체적으로는 사적연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연금소득세의 과세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현재 TTE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뉴질랜드가 있고, ETT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스웨덴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경우 EET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ETT형을 채택하고 있다(김원식·방하남 2005 참조).

4) 이 경우에도 일정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는 인정되었다. 즉,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여 연금상품의 판매촉진을 세제지원하고 있었다.

5) 소득공제를 인정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함께 사적연금에 해당하여 소득공제의 한도(개인연금불입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완전한 면제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퇴직연금의 형태

현행 퇴직연금의 운용형태는 기여금 납부액을 사전에 확정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과 연금수령액을 사전에 확정하여 운용하는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으로 구분되며, 종업원이 직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가입상태가 유지되도록 통산하는 장치인 개인 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1)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인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이를 불입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운용형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운용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게 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인 기업은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기금의 운영은 사외의 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의 운용책임이 종업원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연금계정의 관리도 개인별로 이루어진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재원이 사외의 위탁관리회사에 예치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발생 등 재무적 위기가 오더라도 연금수령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개인별로 계정이 관리되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의 이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책임이 종업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의 크기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연금기여금을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충하여 종업원에게 일정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기업이 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완결된 것은 아닌 상태가 되고, 실제로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한 후에야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완료되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연금액의 크기는 일시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이 금액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한 경우와 동등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여금의 납부가 퇴직금 지급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기여금의 100%를 외부에 예치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은 적다. 다시 말해서 기금의 운용책임이 어차피 기업에게 주어지므로 기여금의 납부와 운용에 대하여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기금의 외부예치 여부를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재무적 위기 발생 시 퇴직금 재원이 없어서 종업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필요자금의 60% 이상)을 외부에 예치하도록 재정건전성확보의무를 두고 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퇴직 시 수령할 연금급여수준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기업이 재무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재원이 100% 외부에 예치된 상태가 아니므로 연금수령의 안정성이 확실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직장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연금의 이전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합한 형태라 평가된다.

(3)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의 통산을 위하여 설정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전환하여 적용할 수도 있도록 선택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에서 퇴직연금이 설정되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법정 퇴직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종전 직장에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데 이것이 개인퇴직계좌이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의 통산기능 뿐만 아니라 단기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을 승계하여 연금형태로 운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개인퇴직계좌는 소규모기업의 퇴직연금제도의 대체수단으로도 이용된다.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업의 선택에 따라 설정한 개인퇴직계좌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금지급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퇴직연금 수령단계의 세제

연금과 관련된 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부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는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의 세제상 유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일시금 수령 시와 연금 수령 시 세제효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형태로 수령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퇴직소득의 경우 별도로 과세되는 특징을 갖는다.

(1)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이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개인퇴직계좌(IRA)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만기이전에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도인출액과 연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금, 연금의 수령을 일시금으로 선택한 경우의 일시금 등이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되므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제외한 퇴직연금 수령액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세로 과세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특징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직소득의 경우 다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거기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퇴직연도에 한꺼번에 과세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집효과와 완화를 위하여 세법은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결집효과와 완화를 위한 규정은 퇴직소득의 분류과세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입법화되어 있다.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시에 연분연승법⁶⁾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그 것이다. 퇴직소득은 다년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될 소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수령액의 45%를 공제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황규영 2006).

<표 1>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퇴 직 금 여 액 퇴 직 소 득 금 액		← 비과세소득 제외
(-)	퇴 직 소 득 공 제	← 정률공제(퇴직급여 × 45%) ⁷⁾ + 근속연수공제 ⁸⁾
퇴 직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 기본세율(8%~35%)
퇴 직 소 득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frac{1}{\text{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표 1>의 세액계산구조에서 근속연수의 계산은 입사시점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로 하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행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로 계산한다.

- 6) 세금의 산출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고, 그 계산결과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세액계산방식을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른다.
- 7) 퇴직연금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05년 말 개정시 50%에서 45%로 축소되었다(소득세법 제48조).
- 8) 근속연수 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연금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제4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연금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단, 총 연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라면 5%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 역시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를 따른다.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의 경우 개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이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연금소득공제액이 연금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연금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연금소득세의 계산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금소득세의 계산구조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의 필요경비	← 연금소득공제 ⁹⁾
연 금 소 득 금 액	
(-) 종 합 소 득 공 제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 기본세율(8%~35%)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를 EET형으로 설계하였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사적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말함)의 경우에는 연금기여금의 납부단계에서 납부액 전액을 소득공제하여 주지 않고 일정한도까지만 소득공제하여 준다는 것이다(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경우에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함). 그러므로 연금의 수령단계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기여금의 납부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 따

9) 연금소득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연금소득공제액의 최고한도는 900만원으로 한다.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 초과금액×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700만원 초과금액×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0%

른 과세대상연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과세대상 연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left\{ 1 - \text{과세제외 비율}^{10)} \right\} \\ \text{과세대상 연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left\{ 1 - \frac{\text{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text{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right\} \end{aligned}$$

위 산식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불입분 전액과 근로자 불입분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기금운용소득 전액이 이의 수령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2. 외국의 퇴직연금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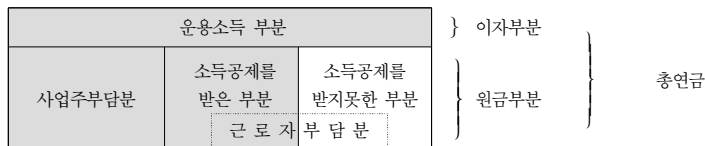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는 기여금의 불입단계와 기금의 운용단계, 그리고 연금의 수령단계별로 나누어 적용된다. 그런데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는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일시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금의 수령 시 과세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 미국의 경우

(1)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을 수령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한다. 미국은 공적연금의 경우 TEE방식으로 과세(불입 시 소득공제 미적용, 운용 시 비과세, 수령 시 비과세)하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EET형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¹¹⁾. EET체계에서는 불입단계에서 면제(소득공제)되었던 소득이 운

10) EET체계 하에서는 불입단계에서 면제(exempt)된 부분이 수령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불입분 중 불입시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된 소득이 사용된 상태(taxed상태)이므로 이를 수령하는 때에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미국의 사적연금은 EET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불입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Section 401(k) Plan’ 밖에 없다. 그러므로 Section 401(k) Plan을 제외한 다른 퇴직연금의 경우 엄격히 말해서 EET형 과세체계를 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이 대부분 불입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적연금과는 달리 수령시점에서 기금운용에 따른 증식분이 과세되기 때문에 수령시점에서 전액 비과세하는 TEE형과는 다르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의 퇴직연금은 EET형을 근간으로 하되 불입 시 소득공제는 일부만 적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용단계를 거쳐 지급될 때에 과세하게 되므로 연금수령시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과세대상 연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2조에서 규정하는 'Annuity Rule'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¹²⁾

$$\text{과세대상 연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left\{ 1 - \frac{\text{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 불입금}}{\text{총 연금수령예상액}} \right\}$$

위 산식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사용자 불입분과 근로자 불입분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기금운용소득 전액이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소득 과세체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Section 401(k) Plan'¹³⁾을 제외한 퇴직연금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총 수령액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 불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통상소득으로 과세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년간 누적된 불입금이 수령연도에 일시에 과세대상액으로 실현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나타난다. 따라서 내국세법은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해주기 위하여「5년 평균법(5분 5승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이러한 5년 평균법의 세액계산구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분연승법과 그 내용이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평균법을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 5년 평균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나. 영국의 경우

(1)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국은 소득세를 4가지(schedule A, D, E, F) 분류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소득별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schedule E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근로소득도 schedule E로 분류하여 과세하므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1996년 11월 19일 이후에 개시되는 연금의 경우 「과세제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대신 간편법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내국세법 제72조(d)에 규정).

13) 미국의 경우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적격요건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지도 않는 혜택이 있다. Section 401(k) Plan은 이러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면서 내국세법 Section 401(k)의 세제적격요건까지도 충족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5년 평균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일시금은 종업원 본인의 사망, 59.5세에 도달, 종업원의 퇴직, 종업원의 장애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1936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일시금 수령시 10년 평균법이나 자본차익우대법(20%의 단일세율로 과세 종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다.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개시는 50세에서 57세 사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고, 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형태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높은 세율¹⁵⁾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연금의 일시금 전환 수령 시 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써 비과세 일시금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schedule E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형태이나 일시금형태이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령형태에 따른 세 부담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도 이를 연금소득과 같이 과세한다. 다만, 연금수령액을 일시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아닌 일시금¹⁶⁾의 경우에는 추가소득(extra income)으로 과세한다. 추가소득으로 구분하더라도 구분된 소득은 세율 적용 시에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세상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경우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일시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비과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최초 연금액 기준으로 2.2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1989년 이후 가입분이나 그 이전 가입분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 1989년 이전 가입분의 경우 최종급여(연간 급여)의 1.5배¹⁷⁾를 비과세일시금의 한도액으로 하되 근속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차 줄어서 최종급여의 3/80까지로 축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이후 가입분의 경우 비과세 일시금은 최초 1년간의 연금수령액의 2.25배를 한도로 하거나 최종급여(규정된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한액)의 3/80에 근속연수(40년 한도)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5) 영국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된다. 10%, 22%(저축소득은 20%), 40%의 3단계 세율로 나누어지는데 연금소득의 경우 저축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의 경우 과세표준이 1,960파운드 이하(초기세율 구간)일 때는 10%의 세율이, 1,960초과 30,500파운드 이상(기본세율 구간)일 때는 20%의 세율이, 30,500파운드 초과액(고세율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영국은 배당소득을 우대하여 초기 또는 기본세율 구간 모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고세율 구간의 경우에도 3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자본이득에 대하여도 세제상 우대하여 7,700파운드 이상의 자본이득은 분리과세하고 있다(박정수 2004 참조).

16) 단기간의 근속 후 조기퇴직하거나 연금의 중도 탈퇴 등의 사유로 수령하는 일시금인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없는 상태이기에 연금수급권의 일시금 전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17) 연금지급 최고한도는 최종급여의 2/3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의 2.2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다.

다. 일본의 경우

(1)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본의 소득세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의 3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이 다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잡소득(雜所得)으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¹⁸⁾ 잡소득 중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text{잡소득 금액(연금소득 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공적연금 등의 공제액}^{19)}$$

일본의 과세체계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과세체계상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같이 취급하고 개인연금은 별도로 취급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일시하고 공적연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점이 다르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일본 소득세법 제31조).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의 1/2로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퇴직소득공제액}^{20)}) \times 1/2$$

18) 일본은 연금소득을 과거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다가 1987년 세법개정시 잡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였다.

19)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일본 소득세법 35조, 조세특별조치법 41조의 15의2).

연령	공적연금 등 수입금액	공적연금 등 공제액
65세 미만	130만엔 이하	70만엔
	1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	수입금액×25%+37.5만엔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	수입금액×15%+78.5만엔
	770만엔 초과	수입금액×5%+155.5만엔
65세 이상	330만엔 이하	120만엔
	3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	수입금액×25%+37.5만엔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	수입금액×15%+78.5만엔
	770만엔 초과	수입금액×5%+155.5만엔

20) 퇴직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20년 이하	근속연수×40만엔(단, 최소공제액을 80만엔으로 함)
20년 초과	800만엔+(근속연수-20년)×70만엔

일본의 경우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²¹⁾.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는 과세표준이 별도로 계산되어 과세된다는 점이 다르다.

3. 각국의 퇴직연금세제의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각 국가별 퇴직연금의 수령 시 과세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다른 소득으로 보고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을 원칙적으로 같은 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연금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반면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연금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이라면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같이 보느냐 아니면 사적연금의 부류에 포함하느냐에 있다.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같이 보아 ‘공적연금등 공제’를 적용하되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사적연금의 분류체계에 포함하지만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국은 연금수령액이든 일시금수령액이든 이를 통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양자간에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연금과 일시금 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영국은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에 따른 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미국의 경우 일시금수령시의 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5년 평균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일시금 수령시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의 일시금전환분에 대하여 일정 한도의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21) 일본의 소득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체제로 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330만엔 이하	10%	과세표준 × 10%
330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0%	33만엔 + (과세표준 - 330만엔) × 20%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0%	147만엔 + (과세표준 - 900만엔) × 30%
1,800만엔 초과	37%	417만엔 + (과세표준 - 1,800만엔) × 37%

〈표 3〉 국가별 퇴직일시금과 연금의 세제비교²²⁾

국별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비 고
한국	<퇴직소득세>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공제	연간 6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
일본	<퇴직소득세>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잡소득세> - 공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간주	한국의 체계와 유사
미국	통상소득으로 과세 (전액 과세대상) - 단, 10년평균법과 자본차익 우대법 해당자는 경감 가능	좌동	일시금과 연금의 과세차이 없음
영국	근로소득으로 과세 * 비전환일시금 : 추가소득 으로 과세	좌동	일시금과 연금의 과세차이 없음 * 비과세일시금과 연금 병행 수령 가능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의 연금소득세 과세체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과세체계가 옳은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의 과세체계가 옳은가의 논란은 논외로 하고 퇴직연금의 수령형태가 과연 과세체계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차별적 요소인가가 생각할 부분이다. 연금형태의 수령이나 일시금형태의 수령이나 간에 본질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따른 소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양자가 본질상 같은 소득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연금형태의 수령 시와 일시금형태의 수령 시에 과세를 달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득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보다는 과세정책이나 기법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더욱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직금재원의 외부예치를 통한 근로자수급권의 안정적 확보와 은퇴 후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연금수령 시 세 부담이 일시금수령 시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기능을 생각하면 연금형태로 수령 시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세제상 우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²³⁾.

22) 임병인·김세환(2004) 참조

23)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체계에서 2층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통상 1층 체계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3층 체계는 개인연금이 담당하며, 1층 체계의 미비점과 재정적 부담을 분담할 2층 체계로서 퇴직연금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전춘옥 2002 참조). 뿐만 아니라 노후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더 큰 빈곤층이 현재의 가치분 소득이 적은 관계로 노후보장을 위한 자본축적보다는 현재의 보상을 선호하게 된다는 빈곤위험(poor risk)의 역선택 이론에 따르더라도

따라서 이후에서는 연금 수령 시와 일시금 수령시의 세 부담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적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I. 일시금과 연금의 세 부담 비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둘 세금의 부담액이 달라지면 근로자는 세금부담이 적은 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 활성화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연금형태로 전환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퇴직연금의 도입 여부를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만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의 선택은 곧 근로자의 수혜금액과 직결되게 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시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채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금과 일시금의 세 부담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여 본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은 임병인·김세환(2004)의 연구와 문성환(2006)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방법인데, 선행연구와의 비교 목적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임병인·김세환의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가정하면서 전체근속기간에 대한 세금에서 중간정산시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퇴직시의 세금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²⁴⁾. 그리고 문성환의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세부담비교시에는 중간정산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면서도(p.30 참조) 근속연수별 세부담 비교에서는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있어서(표 18 참조) 분석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연금확정계수의 적용과정에서도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중간정산이라는 현실적인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수령시가 일시금수령시보다 세제상 불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제상의 불리함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형태의 세제우대를 통하여 이러한 역선택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24) 세법에 따라 경우 최종퇴직시의 세금은 중간정산시의 세금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퇴직과 같이 보아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세법에 따라 경우 임병인·김세환(2004)의 연구 p.82 <표IV-16>의 8분위 소득자의 퇴직소득세는 ₩3,502,059(2004년 세법에 따라 계산함)으로, 임병인·김세환의 연구에서 제시한 ₩2,854,059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분석에 대한 가정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액은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무기간, 연금운용수익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세 부담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의 가정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가. 근로자에 대한 가정

첫째, 2006년 현재 40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수령가능시기인 5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금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참고로 통계청의 2003년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소득수준별로 구분할 때 40세에서 42세에 주로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6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중간 정산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40세~45세를 기점으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40세를 전후한 시기에 이직 등으로 퇴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중간정산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도의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셋째, 계산의 편의상 퇴직이후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연금제도에 대한 가정

퇴직연금의 운용형태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말까지 퇴직연금의 도입실적은 계약체결 12,356건(가입자 138,240명)에 적립액 4,219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이 계약금액 기준으로 6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25) 2006년 9월 말까지 퇴직연금의 도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합계
		비중		비중	기업형	비중	개인형	비중	
계약건수(건)	900	7.3%	3,193	25.8%	8,057	65.2%	206	1.7%	12,356
가입자수(명)	42,681	30.9%	63,461	45.9%	31,892	23.1%	206	0.1%	138,240
가입금액(억원)	2,802.6	66.4%	1,094.2	25.9%	306.9	7.3%	15.1	0.4%	4,218.8

다. 경제변수에 대한 가정

퇴직 후 근로자들이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액이나 부담세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현금흐름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할인율(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시 사용한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임금인상분의 추정에 있어서 승진 등에 의한 임금상승은 계산의 편의상 임금상승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들 경제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표 4>와 같았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표 4> 경제변수의 가정

기 간(년)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50	2051~
투자수익률(%)	7.5	7.0	6.0	5.5	5
임금상승률(%)	6.5	6.0	5.5	5.0	4.5
물가상승률(%)	3				

둘째, 현금흐름은 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금의 수령은 월별로 이루어지고 퇴직일 시금의 수령은 퇴직시점에서 이루어지나 계산의 편의상 이러한 현금흐름은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소득계층별 세부담차이 분석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누어서 각 소득계층별로 연금과 일시금의 세 부담을 분석한다.

소득계층별 소득은 통계청「가계조사」에 나타난 2006년 2/4분기 전국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었다²⁶⁾. 2006년 현재 40세인 근로자가 15년 근속후인 2021년에 퇴직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퇴직 시 수령할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을 계산하면 <표 5>와 같다.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26) 2006년 2/4분기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분위에서 5분위 까지 각각 1,161,380원, 2,082,455원, 2,837,935원, 3,744,322원, 5,797,877원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소득계층	월평균임금(원)		근속연수 (년)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원)
	2006년	2021년		
1분위	1,100,000	2,673,635*	15	40,104,525
2분위	2,000,000	4,861,155	15	72,917,325
3분위	2,800,000	6,805,618	15	102,084,270
4분위	3,700,000	8,993,138	15	134,890,070
5분위	5,700,000	13,854,293	15	207,814,395

* 2006년~2010년까지 4년간은 6.5%,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은 6%, 2021년 1년간은 5.5%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 $1,100,000 \times 1.065^4 \times 1.06^{10} \times 1.055 = 2,673,635$ 」로 계산됨.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연금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연금계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확정연금계수를 구할 때 사용할 이자율은 연금지급기간의 투자수익률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 따라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의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투자수익률은 <표 4>에서 가정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하였다.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확정연금의 경우 최장 20년,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기간 동안 지급된다. 여기서는 확정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맞추어 연금수령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일 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연금수령기간별로 확정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계층별 연금수령액을 계산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소득계층별 퇴직연금

소득계층	확정연금(단위 : 원/연간)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8,981,764	5,043,202	3,787,144	3,180,967
2분위	16,330,482*	9,169,459	6,885,718	5,783,576
3분위	22,862,678	12,837,244	9,640,006	8,097,008
4분위	30,209,827	16,962,620	12,737,918	10,699,062
5분위	46,541,877	26,132,959	19,624,297	16,483,194

* 퇴직일시금 72,917,325원을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6년(=2021년+5년)의 투자수익률 6%를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확정연금계수인 4.465106으로 나눈 금액임.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세부담액의 계산은 현재의 세법 규정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가정하였던 대로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고 가정하고, 연금수령 시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종합소득공제는 배우자와 본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합한 금액인 2,6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시금수령시의 세액의 계산은 <표 7>과 같고, 연금수령 시 세액의 계산은 <표 8>과 같다.

<표 7> 일시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소득계층	퇴직일시금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1분위	40,104,525	18,047,036	8,000,000	14,057,488	1,124,599
2분위	72,917,325	32,812,796	8,000,000	32,104,528	2,568,362
3분위	102,084,270	45,937,921	8,000,000	48,146,348	3,851,707
4분위	134,890,070	60,700,531	8,000,000	66,189,538	5,295,163
5분위	207,814,395	93,516,477	8,000,000	106,297,917	8,503,833

<표 8>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수령 기간	소득 계층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	종합소득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5년	1분위	8,981,764	5,296,352	2,600,000	1,085,411	86,832
	2분위	16,330,482	6,533,048	2,600,000	7,197,434	575,795
	3분위	22,862,678	7,186,268	2,600,000	13,076,410	1,322,990
	4분위	30,209,827	7,920,983	2,600,000	19,688,454	2,447,104
	5분위	46,541,877	9,000,000	2,600,000	34,941,877	5,040,119
10년	1분위	5,043,202	4,117,281	2,600,000	—	—
	2분위	9,169,459	5,333,892	2,600,000	1,235,567	98,845
	3분위	12,837,244	6,067,449	2,600,000	4,169,795	333,584
	4분위	16,962,620	6,596,262	2,600,000	7,766,358	621,309
	5분위	26,132,959	7,513,296	2,600,000	16,019,663	1,823,343
15년	1분위	3,787,144	3,614,858	2,600,000	—	—
	2분위	6,885,718	4,854,287	2,600,000	—	—
	3분위	9,640,006	5,428,001	2,600,000	1,612,005	128,960
	4분위	12,737,918	6,047,584	2,600,000	4,090,334	327,227
	5분위	19,624,297	6,862,430	2,600,000	10,161,867	827,517

〈표 8〉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계속)

수령 기간	소득 계층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	종합소득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20년	1분위	3,180,967	3,180,967	2,600,000	—	—
	2분위	5,783,576	4,413,430	2,600,000	—	—
	3분위	8,097,008	5,119,402	2,600,000	377,606	30,209
	4분위	10,699,062	5,639,812	2,600,000	2,459,250	196,740
	5분위	16,483,194	6,548,319	2,600,000	7,334,875	586,790

연금소득세의 경우 연금수급기간에 걸쳐 다년간 발생하므로 퇴직소득세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할인율은 연금개시시점의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연금소득세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퇴직소득세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비교(소득계층별)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1,124,599	363,872	—	—	—
2분위	2,568,362	2,425,458*	727,507	—	—
3분위	3,851,707	5,572,915	2,455,207	1,252,491	346,494
4분위	5,295,163	10,308,092	4,572,888	3,178,110	2,256,592
5분위	8,503,833	21,230,814	13,419,963	8,037,051	6,730,435

* 연금액 16,330,482원에 대한 연금소득세액 575,795원을 $i=6\%$, $n=5$ 년의 연금현재가계수(4.21236)로 할인한 현재가치임.

<표 9>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의 세 부담이 일시금의 세 부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하로 할 때 연금의 세 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의 세 부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시금의 세 부담이 작은 이유는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세액을 계산할 때 연분연승법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세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²⁷⁾.

27) 본 사례의 경우 일시금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함에 따라 최저세율(8%)로 과세된 상태이다.

3. 근속연수별 세 부담 차이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속연수의 차이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적용세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연금과 일시금의 세 부담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근속연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7세에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속 후 퇴사하는 표준근로자모형을 가정하였다. 표준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앞서 분석한 계층별 소득구조를 참고하여 2,500,000원으로 가정하였고²⁸⁾,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은 6%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른 가정은 앞의 분석에서 설정한 것과 같다. 근속연수별 세 부담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비교(근속연수별)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0년	1,649,932	809,723	—	—	—
15년	3,314,321	4,588,361	2,160,017	1,012,162	154,418
20년	6,095,698	15,372,695	8,526,397	5,718,338	4,665,512
25년	10,362,644	38,082,773	25,032,824	19,916,872	16,093,935
28년	14,015,995	61,372,572	39,690,902	33,622,023	29,799,086

<표 10>을 보면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장기근속의 경우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10>의 분석 대상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가 아닌 표준근로자인 것을 생각하면 장기근속자에게 연금소득세가 불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금소득세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 된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과연 입사 후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가정인가의 여부이다. 경제구조가 선진화될수록 고용의 불안정은 심해질 것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과거 평생직장의 개념은 앞으로의 경제환경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직가능성을 고려하여 15년 근속 이후 한 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세 부담 비교하여 보았다²⁹⁾. 입사 후 15년이 되는 시기에 이

28) 참고로 2006년 1월 잡코리아가 조사한 대기업 대졸사원의 평균연봉은 2,807만원으로 월평균 기준 230만원 선이다(문성환, 2006).

29)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별 평균근속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에 따르면 45세 이후 근속연수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

직이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행한다는 가정 하에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 등 통산장치를 통하여 승계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이 없는 것과 같이 최종퇴직 시에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금을 최종퇴직 시까지 재투자할 수도 있고 퇴직시점에서 소비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세 부담의 차이를 동일한 기준 하에 비교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최종퇴직 시까지 투자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였고, 재투자차익의 수령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된다고 가정하였다.

<표 11>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비교(근속연수별 - 중간정산 가정 시)

근속연수	일시금의 세부담 합계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0년	1,649,932	809,723	—	—	—
15년	3,314,321	4,588,361	2,160,017	1,012,162	154,418
20년	10,334,762*	15,372,695	8,526,397	5,718,338	4,665,512
25년	20,286,891	38,082,773	25,032,824	19,916,872	16,093,935
28년	28,121,345	61,372,572	39,690,902	33,622,023	29,799,086

* 20년 되는 시점의 추가퇴직금(₩ 40,089,190)에 대한 퇴직소득세 ₩ 1,643,924와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3,314,321)의 최종퇴직시점의 가치 ₩4,435,307의 합계액에다 중간정산퇴직금의 투자차익(₩ 30,396,648)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 ₩4,255,531을 가산한 금액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가정한 분석결과인 <표 11>에 따르면이라도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금수령 시 수령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령기간을 5년으로 한 경우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근속연수가 25년인 근속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10년으로 비교적 짧게 선택하게 되면 연금소득세의 부담이 퇴직소득세의 부담보다 많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퇴직연금의 수령가능시점이 55세 이후이고 국민연금의 수령가능시점이 65세 이후인 점을 생각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가교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28년인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5년부터 20년의 어느 기간으로 선택하더라도 연금소득세의 부담이 퇴직소득세의 부담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평균사원을 표준근로자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기에 이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나이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근속연수	1.6	2.7	4.8	6.8	8.4	9.3	9.5	7.5	5.9

을 가정한 현실적인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연금소득세의 체계가 퇴직소득세보다 일정부분 세 부담이 많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IV. 세 부담 차이의 해소방안

1. 연금세제 지원방안의 종류와 개요

앞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세제체계는 연금의 경우가 일시금의 경우보다 고소득자나 장기 근속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조세혜택은 다양한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먼저 연금기여금의 불입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측면과 사용자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자측면에서는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어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사용자측면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는 보수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퇴직소득세의 세 부담을 강화하여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보수적인 방법과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연금제도의 확대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방향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차치하고 나머지 방안별로 각 방안의 특징과 타당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를 축소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이만우 외 2006).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퇴직금 재원의 외부예치를 유도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가지는 수급권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목적인 바가 크다. 이러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하여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한다는 생각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퇴직금제도 하에서도 퇴직금재원의 외부예치를 유도하는 장치는 있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이 그것이다. 세법은 퇴직금 재원의 외부예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추계액의 40%까지만³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이 재원을 외부에 예치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를 축소한다고 하여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한다는 직접적인 보장은 없다. 퇴

30) 2005년 말 퇴직연금의 도입에 맞추어 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07년~2008년은 퇴직금추계액의 35%까지를, 2009년 이후에는 30%까지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로 하도록 축소하였다. 또한 급여기준 한도를 2007년부터 급여의 10%에서 5%로 축소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축소분을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적연금의 가교연금으로서의 기능이나 공적연금의 보완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퇴직연금의 조 기정착에는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 축소분을 퇴직연금으 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종업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확대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한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의 도입이 노사 간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 라서 기업측의 유인 제공보다는 종업원 측면에서의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 가 있을 수 있고 세 부담 형평의 입장에서라도 바람직하다. 이 방안의 또 다른 단점은 기업의 자금부 담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내부적립제도로 운영되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금제도로 전환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기업의 급격한 자금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적 측면 에서 외부적립의 강제가 역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기업이 퇴직금재원을 운영자 금으로 채투자함에 따른 추가이익이 클 경우 외부적립보다는 내부적립이 노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 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³¹⁾.

둘째, 퇴직소득세의 세부담을 연금소득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퇴직소 득세에는 다년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 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근 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해주는 근속연수공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수령액의 일정률(2006년 현재 45%)을 공제하여 주는 정률공제의 경우는 이러한 결 집효과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연금소득세와의 형평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임병인·김세환 2004). 생각하건대 현행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는 결집효과의 완화라는 역할보다는 다른 의도에 서 만들어진 제도에 가깝다. 퇴직소득은 다년간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도 있지만 퇴직 후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퇴직 후에는 일반적으로 마 땅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퇴직금이외에 가처분소득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조세의 원칙 중 하나인 능부담의 원칙상 퇴직소득처럼 담세력이 약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제상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의 일정률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 제하여 주는 정률공제를 두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정률공제를 축 소하거나 폐지하여 연금소득세와의 형평을 제고하지는 대안은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안 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설사 이 방안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폐지나 대폭축소는 장기간 존치되어 온 퇴직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따라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한계 가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연금소득의 본질에 대하여 상기해 보자. 연금소득은 퇴직소득과 같이 근로의 대가가 다년간

3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기업연금의 미적립제도(book reserve)로의 운영을 허락하 고 있다(김원식·방하남 2005).

누적된 후 일시에 실현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연금소득은 퇴직소득과 속성이 같고 본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점이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일시하는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금소득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³²⁾. 연금소득이 근로의 대가라고 해서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자는 말은 아니다.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면 퇴직소득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결집효과를 완화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한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세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연금소득과 퇴직일시금소득을 공히 근로소득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그들도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금수령 선택 시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연금소득을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만들어진 세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퇴직금과 연금은 그 발생행태가 다르다는 점도 이 둘을 통합하는 방안이 적절치 않음을 말해준다. 퇴직금은 다년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지만 연금의 경우 누적된 소득이 연차적으로 실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연금소득세제의 원형을 유지하되 퇴직소득세와의 형평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금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유연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연금의 경우가 퇴직일시금의 경우보다 세 부담이 증가되는 이유는 근속연수가 장기인 근로자의 경우와 고소득근로자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근속연수가 장기인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연금소득도 근속연수공제와 같은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득공제는 퇴직소득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결집효과와 완화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데 결집효과와 완화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도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연금의 수령기간을 장기로 선택하게 되면 결집효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상쇄된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뜻이고 이러한 납세자의 선택 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세제체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속연수공제의 추가는 논리적 타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연금소득세를 입법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근속연수공제와 같은 장치는 두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금소득공제 확대방안

본 연구에서는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차이를 해소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행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제 지원은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더라도 논리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다른 세법규정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³³⁾.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연금소

32) 과거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판결 73다278, 1973. 10. 10)에서도 퇴직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판시하고 있다(임병인·김세환 2004, p.102 참조).

33) 조세우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세우대는 과세의 중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고, 온정주의에 기반한 조세

득이 가지는 과세소득의 본질과 괴리되지 않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연금소득의 본질은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현행 세법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유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경비를 개산공제(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고, 이것이 근로소득공제로 입법화되었다. 또한 연금소득의 경우도 본질이 근로의 대가가라는 점을 반영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금소득공제이다. 그런데 연금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는 달리 공제의 최고한도(연간 900만원)가 규정되어 있고, 공제액도 근로소득공제보다 65%수준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은퇴 후의 필요소득이 근로시의 약60%선으로 보아 연금급여수준을 설계함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의 약60%선에서 정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의 계산구조상에서는 “필요경비”의 항목으로 정의되지만 그 공제액의 적용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개념보다는 저소득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강하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단계별로 공제율을 급여액의 50%, 15%, 10%, 5%로 순차적으로 하향적용하고 있다. 연금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주식 9)”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을,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단계별로 연금액의 40%, 20%, 10%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은퇴 후의 소득이 근로시기의 소득의 60%선만큼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최저소득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생각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은퇴 후 소득이 적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세후금액은 근로 시와 같이 일정하게 확보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소득공제수준을 근로소득공제수준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퇴직 후에는 다른 소득원이 별로 없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연금소득의 경우가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담세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연금소득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명확해 보이며, 오히려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세제상 우대할 필요도 인정된다. 퇴직소득의 경우 정률공제를 두는 이유도 퇴직소득이 가지는 담세력의 약화를 반영하여 세제상 혜택을 준 것임을 생각하여야 한다.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순수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기금의 운용에 따른 증식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달리 연금소득은 이러한 증식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를 적게 인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연금에 포함된 증식소득의 경우 장기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서도 장기저축성보험(보험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의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점

우대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Whitehouse, 2000). 따라서 조세우대는 정책적 목적과는 별도로 법리적 타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을 고려하면 그 증식분을 전액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최소한 단기적 이자증식소득과는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건대 연금소득의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의 그것보다 낮게 책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연금소득공제가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정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 차이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비교(연금소득공제 확대 - 중간정산 가정 시)

근속연수	일시금의 세부담 합계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0년	1,649,932	—	—	—	—
15년	3,314,321	2,623,386	591,922	—	—
20년	10,334,762	12,257,652	4,810,109	2,862,518	1,734,543
25년	20,286,891	31,857,592	19,590,040	12,931,231	8,743,356
28년	28,121,345	53,982,900	33,521,411	26,439,815	21,317,079

<표 1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에는 연금수령기간을 5년의 단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소득세가 가지는 불리한 세 부담이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연금수령기간이 5년인 단기의 경우에도 세 부담이 퇴직소득세의 세 부담보다 작아지도록 세제유인을 줄 것인가의 문제는 연금의 본질적 기능을 생각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감안한다면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수준으로 상향하거나 근로소득공제보다 우대하는 수준으로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34) 일본의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일본 소득세법 제28조).

급여수입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62.5만엔 이하	65만엔
162.5만엔 초과 ~ 180만엔 이하	급여수입×40%
180만엔 초과 ~ 360만엔 이하	18만엔+급여수입×30%
360만엔 초과 ~ 660만엔 이하	54만엔+급여수입×20%
66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120만엔+급여수입×10%
1,000만엔 초과	170만엔+급여수입×5%

일본의 연금소득공제는 주식 19)에 제시되어 있다.

35) 연금의 수령기간을 5년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므로 <표 12>의 결과는 연금수령 시 나타나는 세 부담의 불리한 요소가 해소된 결과와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방안은 정책적인 입장이 아닌 조세형평성확보의 차원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구조가 노령화되면서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에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승계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해주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 나누어 수령단계의 세 부담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세부담차이의 분석은 경제변수를 가정한 상황 하에서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에 비하여 세 부담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여부가 노사 간의 합의에 전적으로 좌우됨을 생각할 때 이러한 세 부담의 차이는 퇴직연금의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이 근로제공에 따른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양자의 세 부담 차이는 과세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방안은 연금기여금의 불입단계와 연금의 수령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여금의 불입단계에서는 종업원 불입분의 소득공제 확대나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이 거론 될 수 있다. 연금의 수령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 축소 방안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재무관리적 측면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소득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결집효과의 완화와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퇴직소득세제의 입법취지와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세 부담 완화하는 방안으로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소득은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연금소득은 노후소득으로서 근로소득보다 담세력이 약하다는 점을 생

각하면 근로소득공제 이상의 소득공제혜택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연금소득에 포함된 기금증식분에 대한 과세문제를 포함하여 생각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 수준의 소득공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이 보험과 같이 사회보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취지에 맞추어 연금기여금의 증식분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퇴직소득세에 비하여 불리하였던 세 부담이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제상의 형평성확보와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석과정에서 가정한 경제변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적 수단으로서의 연금의 역할은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가교연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세제지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재정계산 연구보고서
- 국중호,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원식 · 방하남, 2005,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 김진수 · 배준호, 2006,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김화동, 2002, 「일본의 신퇴직연금제도－일본판 401k」, 명경사
- 노동부, 2006, “매월노동통계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 대법원, 1973.10.10선고, 73다278판결
- 문성환, 2006,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9호
- 박정수,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2006, 「조세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
- 윤태화 · 박일력, 2005,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 이만우 · 신현걸 · 노준화, 2006,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임병인 · 김세환, 200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4
- 전영준, 2001, “2000년 연금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정책과제”, 재정포럼 통권 제58호
- 전춘옥, 2002,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우대와 세제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 황규영, 2006, 「세무회계정해」, 신광문화사.
- <http://www.fsc.go.kr>
- <http://www.nps4u.or.kr>
- <http://www.kidi.or.kr>
- <http://www.molab.go.kr>
- <http://laborstat.molab.go.kr>
- Whitehouse, E., 2000, *Taxation－The tax treatment of founded pension*, 2000World Bank,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 World Bank Report No.20204-KO, May.10.2000

A Study on the Tax Effect of Retirement Pension and Improvement Scheme for Pension Tax*

Hwang Gyuyoung**

— <Abstract> —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the pension income tax is unfavorable to tax payers compared with the retirement income tax, and this unequal tax burden prevents people from actively joining the retirement pension plan.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a tax burden of pension income and that of retirement allowance by using simulations. In this paper, expanding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for reforming the current tax system in order to urge people to join the pension plan and to mitigate the tax inequality between the pension income and the retirement allowanc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tax burden of the pension income is greater than tha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specially, for higher income employees and long-term employed person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xtra tax burden of the pension income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s joining the pension plan.

This study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that are expected to proliferate the pension plan, and suggests expanding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as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reforming the current tax system. By expanding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to the level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higher income employees and long-term employed persons is allowed to reduce a great deal of unfavorable tax increase of the pension income.

The pension income is basically identical to the earned income, because both of them are deferred incomes and annually realiz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crease the current pension income deduction to the level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Furthermore, since the pension income is capable of bearing tax less than the earned income, it may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at least up to the level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depending on the tax policy.

<Key words> retirement pension plan,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income tax, pension income tax, pension income deduc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okmin University(Internal Research Fund—2006).

** Assistant Professor, Colla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